

트러스톤 밸류웨이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 코드: AP907)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 밸류웨이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별첨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국내 가치주에 투자하여 비교지수(KOSPI)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트러스톤자산운용(주) (02-6308-0500)

집합투자기구 특징	국내 가치주에 투자하여 비교지수(KOSPI)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톤자산운용(주) (02-6308-05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계속 모집할 수 있음	모집(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19. 5. 9.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연, %)	C	Ce	S-T
	가입제한 없음	인터넷을 통해 가입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가입
	-	-	-
	-	-	-
	판매 운용 등 기타	0.700 0.530 0.000	0.350 0.530 0.000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1.230 1.232	0.880 0.882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클래스의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4)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 판매 및 운용 보수 등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지급되며 기타 보수는 사유 발생시 지급됩니다.			

매입 방법 기준가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 준가격으로 매입 15 시 30 분 경과후 : 제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제 4 영업일에 지급 15 시 30 분 경과후 : 제 3 영업일 기 준가격으로 제 4 영업일에 지급
	· 산정방법 :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 · 금융투자협회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판매회사 영업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자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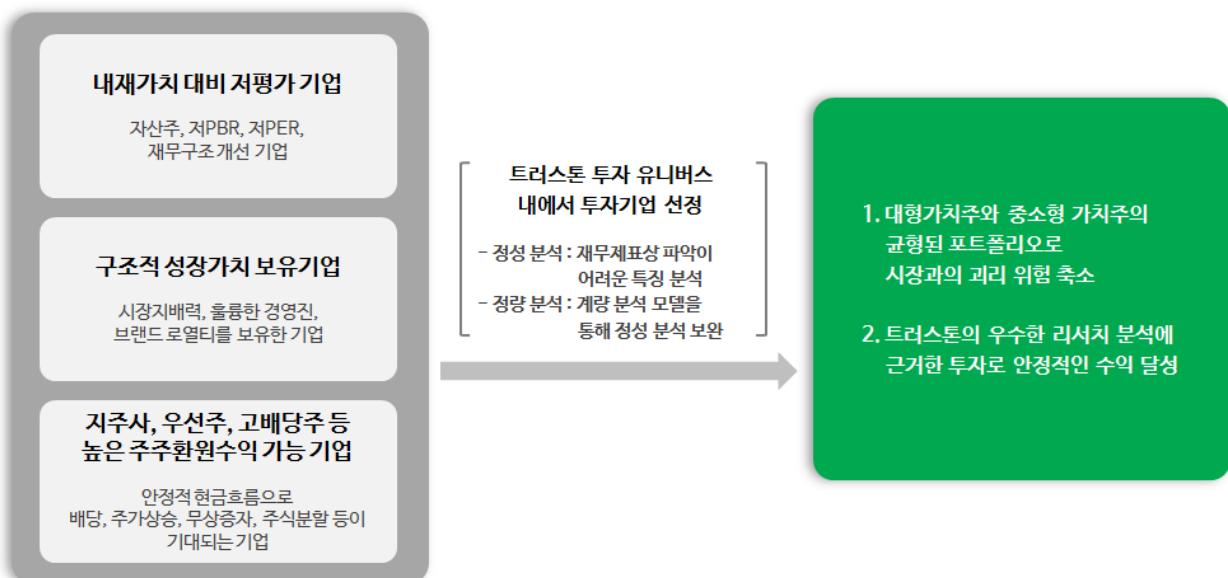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지수 X 100%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안정적 현금 흐름과 산업내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비교지수(KOSPI)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1. 저평가 영역 기업

- : 트러스톤의 내부 리서치 조직의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저평가 기업군 선정
 - 정성 분석 : 재무제표상 파악이 어려운 특징 분석(숨겨진 자회사 가치, 장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 부채의 실제가치등)
 - 정량 분석 : 트러스톤 투자전략팀의 다각도 쿼нт 스크리닝을 통한 분석 (단순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저 PER(주가수익비율), 자산가치 증가종목, 현금흐름 개선종목, 부채감소종목 등을 분석)

2. 구조적 성장 가능 기업군

- : 상표 충성도, 경영 관리,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선정

3. 지속적 주주환원이 가능한 기업

- : 안정적 현금흐름으로 주주환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기업 선정
 - 연간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 가능 기업군
 - 미래 높은 주주환원이 예상되는 기업 선택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2019. 3. 31. 현재, 단위:개, 억원)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이양병	1973년	책임 운용역 (상무)	21	6,645	학력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력 12.02~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 10.09~12.01 삼성자산운용 Growth주식운용2본부 09.06~10.09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07.09~09.05 PCA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 05.04~07.09 칸서스자산운용 리서치팀 03.05~05.04 서울신용평가정보 평가본부	
한규민	1991년	부책임 운용역	4	370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학력 서강대 경영학 졸 경력 16.07~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주식운용 1 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의 운용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u>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u>						
운용전문인력			이양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1,715억원			

5 투자실적 추이

-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종류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8.03.17 ~19.03.16	17.03.17 ~18.03.16	16.03.17 ~17.03.16	15.03.17 ~16.03.16	14.03.17 ~15.03.16
C 클래스	-6.79	10.21	-4.82	-0.64	3.28
비교지수	-12.75	15.99	8.87	-0.63	3.51

주 1) 비교지수 : KOSPI × 100%

주 2) C 클래스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표준편차	투자위험등급
10.75%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모집합투자기구(주식형)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으로서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10.75%로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재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 등급 분류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대상 및 투자유의 종목 등 펀더멘탈이 훼손된 종목은 사전적으로 매매를 제한
- 비교지수를 추적하는 가운데 적정 추적오차 범위를 유지
- 특정 섹터 및 종목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지양하고 섹터간 밸러스를 유지

III. 집합투자기구 기타 정보

1. 과세

수익자는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입자격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년 6.30. 이전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2015.12.31.까지 [가입신청 이후 익일 매수하므로 2015. 12. 30. 기준시간 이전까지 신규 신청(자금 납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축	10년 이상
계약기간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합니다.
가입한도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 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세액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합니다(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추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